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Newsletter 부터는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관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OECD Update

BEPS 2.0 (디지털세) 진행 상황

- EU on digital services tax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6/tnf-united-states-reportedly-withdrawing-from-talks-with-eu-on-digital-services-tax.html>

- 2020 년 6 월 17 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는美 세입 하원 위원회(House Committee on Ways and Means)를 통해 미국이 유럽연합과 디지털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 Treasury Secretary Mnuchin seeks "pause" in OECD Pillar 1 discussions of digital economy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06 July 2020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이사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https://home.kpmg/us/en/home/insights/2020/06/tnf-treasury-secretary-mnuchin-seeks-pause-in-oecd-pillar-1-discussions-of-digital-economy.html>

- 미국 재무장관인 스티븐 므누신은 지난 2019년 12월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에게 미국은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에 미칠 차별적 영향으로 인해 디지털세 도입을 명확히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OECD가 다자간 협정에 성공적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국가가 디지털세 도입을 중단해 줄 것으로 촉구하였습니다.
- 스티븐 므누신은 2020년 6월 12일 서신을 통해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및 영국 재무장관들에게 OECD에서 논의되고 있는 Pillar 1 (BEPS 2.0)논의를 잠시 중단하자는 제안을 공식적으로 보냈습니다.
- 미국은 과세대상 실체적 거점 (Taxable nexus of physical presence)과 정상가격원칙은 세이프하버(Safe Harbor)를 기반으로 이행되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 OECD Secretary-General Angel Gurría has reacted to recent statements and exchanges regarding the ongoing negotiations to address the tax challenges of the digitalisation of the economy (2020.6.18. OECD 발표)

<https://www.oecd.org/tax/beps/oecd-secretary-general-angel-gurria-has-reacted-to-recent-statements-and-exchanges-regarding-the-ongoing-negotiations-to-address-the-tax-challenges-of-the-digitalisation-of-the-economy.htm>

OECD 사무총장 앙헬 구리아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해 디지털세 도입 논의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의 디지털화로 인해 발생하는 세금문제 해결은 시급한 과제임
- 모든 구성원들은 COVID-19 위기를 포함하여 지난 3년 동안 많은 기술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다자간 해결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국가들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며, 이미 디지털세를 도입한 국가들은 다자간 해결책을 더 이상 지지하지 않을 것
- 이는 결국 세금 분쟁을 야기할 것이며, 불가피하게 무역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며, 특히 세계 경제가 역사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무역전쟁은 경제, 일자리 및 여력을 더욱 악화시킬 것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이사

(Tel: 02-2112-0277)

2. 국제조세/관세 Update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2020.06.12)

2020년 6월 12일에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이 행정예고 되었으며,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1조(세무조사의 사전통지) :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신설되었으며, 이 중 '국제거래 및 역외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루했거나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린 혐의가 있는 경우' 가 포함되었습니다.
- 제46조(조사결과의 통지) : 세무조사 진행 중 ①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② 과세기준자문·과세사실 판단자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조사를 종결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먼저 통지한 뒤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개정사항 반영)
- 제69조(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신청 거래에 대한 조사 유예) 신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수령하기 전에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으로부터 정상가격산출방법의 사전승인 신청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 (조사국장, 서울청은 국제거래조사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사전승인 신청대상기간에 대한 이전가격부분의 조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세 최신 판례: 조심2019관0135 (2020.06.08)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 중 상표가 부착된 물품은 그 자체로 상표권과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물품과 동일 또는 대체물품을 제 3자로부터 구매한 실적이 없어 쟁점물품 없이는 쟁점브랜드 담배를 생산할 수 없어 보이는 점, 쟁점로열티를 지급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로열티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되며, 2011년 부산세관장은 동일물품에 대해 지급된 로열티가 과세대상이라고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2014년 서울세관장의 공적 견해표명에도 쟁점로열티를 신고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3.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Netherlands: Transfer pricing issues in context of COVID-19

June 23, 2020

네덜란드: 코로나바이러스(COVID-19) 위기에 따른 이전가격 시사점

주요 고려사항 및 접근방식

COVID-19 위기에 대한 영향 및 대응방식은 각 다국적기업 그룹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다국적기업들은 COVID-19 위기에 따라 이미 이전가격 정책을 변경한 반면, 이외 다른 기업들은 향후 경기 흐름과 정부 대책을 지켜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납세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하나의 접근 방식으로 두 단계 접근법(Two-step Approach)이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COVID-19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이전가격 정책 변경을 통한 영향 해결 방법 및 시기 결정

또한 납세자는 이전가격 정책 변경과 정부대책(예: 네덜란드의 NOW 정책)간의 상호 작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만약 이전가격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경우 동종업계 제3자의 대응방법 관련 근거자료와 함께 이를 이행하고 문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공통적인 이전가격 문제

다국적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각 국가에서 COVID-19 대책과 직면하는 여러 주요 이전가격 문제들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서비스가 거의 또는 전혀 제공되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낮고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할 것인가?
- 유동성 및 현금관리 등 기존 금융약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기존 계약을 조정하거나 종료할 것인가?
- 불가항력 조항을 적용시킬 수 있는가?
- 이전가격 정책을 지금 변경할 것인가 또는 COVID-19 이후 변경할 것인가?
- 납세자는 제3자의 대응방안에 따라 내부정책을 조정할 수 있는가?

- 납세자는 본사 비용 및 관리비 청구를 중단할 수 있는가?

쟁점사항

기업들은 집권관리조직 또는 분권적조직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 구조 및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사업 유형과 무관하게 이전가격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으며, 특히 COVID-19 사태로 인한 급격한 매출 감소를 규명하기 위해 이전가격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다국적기업의 그룹전체가 손실을 실현하고 있음에도 통상 이익률 수준으로 과세 시 여전히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대응의 필요성 여부, 그리고 지금 대응하는 것이 적합한 시점인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납세자들이 대응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 계약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이전가격 관점에서 제3자가 특정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고려하고 특수관계자 간 상황에 접목시킬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 대부분의 특수관계자 간 계약에는 “불가항력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조항은 제3자 간 계약에도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발생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간 계약에 불가항력적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계약을 재협상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마지막 수단으로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 계약을 통해 재협상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장기 계약의 경우 낮은 보상으로 협의)

만약 조정을 수행할 경우 납세자는 회사의 특수사항을 고려하여 개별 기준으로 변경 또는 조정 사항을 검토해야 하며, 추후 변경될 상황에 대해 평가하고 조정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판단하여야 합니다. 납세자는 조정한 사항, 변경한 정상가격과 불가항력을 발생시키는 이유를 문서화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납세자가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문서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분석?

경제적 실질이 서비스 제공업자(SP), 제한된 위험을 부담하는 도매업자(LRD), 계약 제조업자(CM) 또는 임가공업자(TM)와 같이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들의 경우 COVID-19 사태로 인해 사업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상가격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제분석에서는 이번 COVID-19 사태로 인한 이익률 하락 영향이 2020년 데이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고, 반영이 될 경우 통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업들의 이익률은 동일하게 감소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이익률 조정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2020년 경제분석 데이터 정보는 아직 갱신되지 않았으므로 2020년 이익률 하락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다른 정보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제분석 수행 시 고려해야 할 점입니다.

- 현재 사업 현황을 최대한 고려하여 다양한 변수(예: 낮은 수익 기준, 손실 발생 기업 포함)를 설정함으로써 최신 데이터 정보 사용과 적절한 재무 및 기타 비교가능성을 조정
- 공공/상장 기업들의 2020년 분기 및 반기 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 해당 데이터 활용
- 과거 경기 불황기의 이익률 데이터 활용

이전가격 정책 변경에 대한 적정 시기 관련 고려 사항

납세자들은 현행 이전가격 정책을 변경하기에 적합한 시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 현재 시점은 현 상황들에 대한 이전가격 모델 개발에 대한 충분한 대응방안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사업 환경이 복잡하므로 이전가격 모델 변화는 사업 관리 및 구조 방식(예: IT 구현 방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이전가격 정책 변경에 대한 현지 과세당국으로부터 의문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며, 이전가격 관련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입증 및 문서화해야 합니다.
- 기존 APA가 체결되어 있는 기업들도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원칙적으로 APA에서 합의된 이전가격 정책에 구속되나, 이번 COVID-19 위기로 인해 APA에 적용된 적정 이익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타사의 대응방법과 관련된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네덜란드 세무당국과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 검토하고 적절한 시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이전가격의 부합성: 일자리 유지 정책 "NOW"

네덜란드 정부는 COVID-19 위기 대응을 위해 일자리 유지 정책(Temporary Emergency Bridging Measure to Retain Jobs, "NOW")을 도입하였으며, 동 정책은 네덜란드에 소재한 기업들의 임직원 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며, 기업의 매출 감소율에 따라 적용하게 됩니다. 이전가격과 NOW 정책 관련하여 다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NOW 정책에 적용되는 매출 감소는 네덜란드 기업의 그룹 전체 매출액 기준이며, 그룹에 대한 정의는 네덜란드 민법에 의거합니다. 그룹 전체의 매출액이 20% 미만 감소하였지만, 그룹 내 개별 회사의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하였을 경우 개별기업 접근법을 통하여 NOW 정책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NOW 정책 본문에 서술된 핵심 내용에 따르면 개별기업접근법을 적용할 경우 이전가격 정책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 정부에 NOW 보조금 신청서 제출 시 감사인의 진술서(Auditor's statement)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감사인들은 매출 감소분에 대해 보다 신중히 검토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또한, 매출 감소분이 완전히 입증 가능하지 않을 경우 네덜란드 정부에 NOW 보조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감사인의 진술서는 2020년이 아닌 NOW 보조금 신청일에 따라 2021년에 NOW 신청서와 함께 첨부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회계사협회(The Dutch Association of Accountants, "NBA")는 현재 네덜란드 사회고용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Employment)와 감사인의 진술서에 포함될 내용과 NOW 정책 적용에 대한 감사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NBA 웹사이트에는 NOW의 정의, 매출액의 정의, 감사인의 진술서 등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FAQ)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가가산법(Cost-plus basis) 이전가격 정책을 적용하는 법인이 NOW 정책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2018년 발표된 네덜란드 이전가격 규정(Dutch Transfer Pricing Decree)에 따르면, NOW와 같은 정부보조금 정책은 해당 보조금과 공급 재화 혹은 용역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고 총 누계액 기준 할인 또는 비용분담 형태로 지급된 경우에만 원가기준(Cost base)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합니다. 네덜란드 연구개발 세제지원 정책(Wet Bevordering Spoor & Ontwikkelingswerk, "WBSO")과 같은 보조금은 원가기준에서 제외되며, NOW 정책이 WBSO와 동일한 기준에서

적용될지의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원가가산법 정책을 채택한 회사에 적용되는 NOW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유서비스센터(Shared service center)와 같이 인적자원 주도 조직 기업들의 경우 인건비가 영업비용의 주요 비용이므로, 원가가산율의 변경만으로 NOW 신청 조건사항인 매출액 감소 20% 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서비스센터 유형의 기업들은 실무적으로 인건비와 같은 비용에 대한 보상 감소에 대한 정당한 소명이 불가할 경우 NOW 보조금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서비스업체 및 제조업체는 변동비 감소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원가가산법 정책을 채택한 이러한 다국적기업들은 이전가격 조정 없이 위험관리 가능 수준에서 COVID-19 영향으로 인해 비용 및 수익이 20% 이상 감소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며, 해당 기업들은 NOW 정책 신청 기회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Australia: Transfer pricing guidance; ATO response to COVID-19](#)

June 23, 2020

호주: COVID-19을 대응하기 위한 ATO의 이전가격 지침

호주 국세청(Australian Taxation Office, 이하 "ATO")은 COVID-19로 인한 이전가격 정책 변동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0년 6월 19일 ATO는 COVID-19가 이전가격 거래조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COVID-19 economic impacts on transfer pricing arrangements](#)) 특수 관계인간의 거래조건 변경([Changing related-party arrangements](#))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COVID-19 대응 ATO 지침 개요

ATO가 발표한 지침은 COVID-19 영향을 입증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접근방법은 ATO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dvanced Pricing Arrangement, 이하 "APA") 부서에서 납세자와 함께 "실시간"으로 COVID-19 영향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방법과 일치합니다. 새롭게 발표된 동 지침은 ATO가 이전에 발표한 과소자본세제(Thin capitalization) 및 COVID-19 관련하여 대차대조표에 대한 COVID-19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빈번한

가치평가 기준점들(More Frequent Valuation Points)을 사용하는 옵션을 강조한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ATO는 특정 납세자가 COVID-19로 인해 부채 한도 면제기준(Safe-harbor Debt Limit)을 초과하였을 경우와 COVID-19 발생 이전 부채금액 및 단기차입금을 증명하기 위한 공정부채기준(Arm's length debt test) 접근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컴플라이언스 검토 절차(Compliance resources)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ATO가 사전에 발표한 지침들과 더불어 COVID-19 대응을 위하여 금번 발표한 이전가격 지침 내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COVID-19가 이전가격 거래조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ATO의 평가방법** – ATO는 COVID-19가 초래한 결과들로 인하여 사업에 대한 변화 및 영향이 입증 가능한 동시대적 현시점 증거를 수집하는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납세자들은 이러한 변화를 검토하고 이행하는 과정을 문서화하고, 수립한 예산과 실제 데이터 간 차이에 대한 영향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전가격 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원칙 관련 지침** – ATO는 현재 적용되는 비교가능회사를 이용한 경제분석이, 특히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COVID-19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이전가격 거래조건 결과를 신뢰성 있게 뒷받침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즉, ATO는 납세자가 COVID-19로 인한 영향을 배제한 거래조건에서 달성할 수 있는 재무적 결과를 고려할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 **실질적 규제 지침(The Practical Compliance Guideline, 이하 "PCG") 2019/1과 COVID-19에 대한 시사점** – PCG는 호주 인바운드 판매업자(Australian inbound distributors)의 이익 수준 및 기능적 요인에 근거한 ATO의 위험평가 접근방법과 추가적인 이전가격 거래 조사를 위한 수익성지표 검토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합니다. ATO는 COVID-19 영향을 반영한 공시자료가 제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PCG 2019/1 검토를 현재 중단한 상태입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ATO가 올해 말 PCG 2019/1과 관련하여 보다 상세하거나 갱신된 지침을 발표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 **COVID-19로 인한 APA 위반** – 납세자가 기 체결된 APA에 반영된 중대한 가정(Critical assumptions) 사항을 침해하였다면, ATO는

이러한 문제를 실무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기 참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 **고위험성 존재 사실관계(fact pattern)** – 이와 관련하여 ATO는 확정적인 외환차손에 대한 변동사항, 글로벌 사업 손실을 포함한 계약상 호주 소재 납제자에게 분담된 위험의 증가, 혹은 과세소득 감소와 같은 절세효과를 달성하기 위한 이전가격 거래조건 검토에 초점을 맞출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KPMG Observation

ATO가 COVID-19로 인한 이전가격 거래의 중요성을 강조한 지침을 발표한 상황에서 납세자들은 이전가격 거래조건 변동사항의 적정성을 고려하고, 이에 뒷받침되는 동시대적 현시점 증거를 구비함과 동시에 이전가격 거래를 문서화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0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